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·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, 법령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소속으로 2025년 2월 24일까지 존속하는 법령데이터혁신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　　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 1. 24. ~ 1. 2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제정보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”을 “법제정보담당관,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및 법령데이터혁신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한다”를 “보하며,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서기관, 기술서기관,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제6호, 제11호, 제13호,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

1.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서비스 개선
2.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
3.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의 전산화
4.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·운용
5.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추진 및 평가 등 총괄
6.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·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

7. 해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지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령데이터혁신팀은 2025년 2월 24일까지 존속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법제정보담당관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획조정관)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, 혁신행정감사담당관, 법제정보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.	제4조(기획조정관) ① ---------- 법제정보담당관,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및 법령데이터혁신팀장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획재정담당관,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, 법제정보담당관은 부이사관,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	③ ---------- 보하며,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서기관, 기술서기관,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⑥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	⑥ ----------.
1. ~ 5의2. (생 략)	1. ~ 5의2. (현행과 같음)
6.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서비스 개선	<삭 제>
7. ~ 10. (생 략)	7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국가	<삭 제>

법령정보의 전산화	
12. (생 략)	12. (현행과 같음)
13.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·운용	<삭 제>
14. ~ 20. (생 략)	14. ~ 20. (현행과 같음)
20의2.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추진 및 평가 등 총괄	<삭 제>
20의3.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·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	<삭 제>
21. (생 략)	21. (현행과 같음)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⑧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다음 사항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
	1.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서비스 개선
	2.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
	3.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의 전산화
	4.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·운용
	5.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

	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추진 및 평가 등 총괄 6.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·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7. 해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지원